

1. 개정이유

항만재개발사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적인 사업시행을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실시계획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 법률에서 위임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 기준(안 제3조, 별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거나 실시계획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행정처분의 통지)”를 “(행정처분의 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처분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중지 처분을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인명 또는 재산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1호	사업자 지정의 취소	-	-
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2호	사업자 지정의 취소	-	-
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법 제15조제2	경고	사업자 지정의	-

1년 이내에 항만재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항제3호		취소	
라.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4호	경고	사업자 지정의 취소	-
마. 제18조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법 제15조제2항제5호	사업자 지정의 취소	-	-
바.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여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5조제2항제6호	사업자 지정의 취소	-	-
사.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1호	실시계획의 취소	-	-
아. 사업시행자가 제17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법 제18조제1항제2호	경고	공사중지 3개월	공사중지 6개월
자. 천재지변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인정되는 경우(중앙심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2)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	법 제18조제1항제3호	실시계획의 취소	-	-

인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5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원형지를 공급 한 경우	법 제15조제2 항제7호 또는 법 제18조제1 항제4호	경고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행정처분의 <u>통지</u>) <u><신설></u> <u>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u>	제3조(행정처분의 <u>기준 등</u>) ① <u>법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u> ② ----- ----- ----- ----- ----- -----